

김봉조

(주)아스프 전문위원

환경경영체제 구축 실무<4>

4) 환경목표 · 세부목표 · 환경경영추진계획

가) ISO 14001 규격의 요구사항 및 해설

환경경영체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이 환경목표 ·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의 수립이다. 환경목표 ·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환경경영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목 차

1. 환경경영체제(ISO 14001) 구축을 위한 준비

2. 환경경영체제(ISO 14001) 구축 실무

- 1) 초기환경 검토
- 2) 환경 방침
- 3) 환경영향평가
- 4) 환경목표 · 세부목표 · 환경경영추진계획
- 5) 운영 관리
- 6) 문서화 및 문서 · 기록 관리 체계
- 7) 환경 교육
- 8) 비상대응체계
- 9) 점검 및 시정조치
- 10) 경영자 검토
- 11) 인증 심사

3. 환경경영체제 사후 관리

4.3.4 환경경영 추진계획

조직은 내부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그에 따른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이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는 관련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조직의 중요한 환경측면, 조직의 기술적 대안, 조직의 재정, 생산 및 영업상의 요건과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하여야 한다.

목표 및 세부목표는 환경방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3.4 환경경영 추진계획

조직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소재의 지정

b)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수립

어떤 프로젝트가 신개발, 신규 또는 수정 활동,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경우, 그러한 프로젝트에 환경경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정되어야 한다.

ISO 14001 규격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환경목표는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환경목적(overall environmental goal)이라 할 수 있으며 세부목표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보다 상세한 성과요건(Detailed performance requirement)이다. 환경경

영 추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으로 책임소재(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기간(언제까지) 및 실행 방법이 포함된 것이다. 즉 여러 개의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부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세부목표 달성 성과의 합이 환경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게 된다. 환경목표·세부목표·환경경영 추진 계획의 사례는 표 6과 같다.

기업은 부서 또는 기능 단위로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 수립시 ISO 14001 규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 관행,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맺은 협정 등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적용한다. 특히 현재까지는 준수가 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법률 및 기타 요건이 변경되어 준수가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다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업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고 환경목표, 세부목표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중요한 환경측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요한 환경측면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므로 환경목표 및 세부

목표 수립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환경측면으로 도출된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되어 환경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기술적 대안, 기업의 재정, 생산 및 영업상의 요구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유무 및 적용 가능성과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투자 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생산공정의 변경이 생산활동 및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에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시는 생산 및 영업상의 요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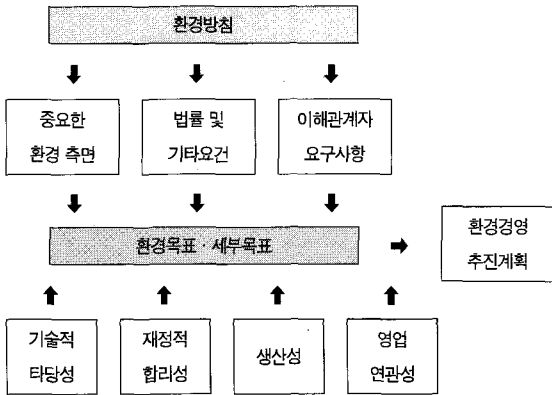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달라는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제품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집단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과 관련된 지역 주민과의 불화는 유·무형의 손실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표 6) 환경목표·세부목표·환경경영 추진계획 사례

환경 개선 계획					
환경목표	세부목표	현재수준	환경경영 추진계획	담당자	추진일정
1. VOC 배출량 감소	1-1 도장공정 50% 감소	7(톤/년)	1-1-1 수용성 도료로 대체 1-1-2 작업 방법 개선 1-1-3 A/C 흡착탑 보수	홍길동 김철수 장길산	6.30 4.30 7.30
	1-2 폐수처리장 20% 감소	2(톤/년)	1-2-1 덮개 및 방지사설 설치	장길산	4.30
2. 환경보호 활동 전개	2-1 교육 년2회 실시	0(회/년)	2-1-1 교육과정 개발 2-1-2 교육 실시	김환경 김환경	3.30 4월, 9월
	2-2 홍보 활동 년4회 실시	1(회/년)	2-2-1 낙동강 청소 2회 실시	이자연	5월, 10월
			2-2-2 금오산 청소 2회 실시	이자연	6월, 11월



(그림1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ISO 14001 규격 4.3.3항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4.3.4항 환경경영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① 환경목표·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으나 설정한 환경목표·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환경목표·세부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추진 계획을 이행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와 전체적으로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였을 때 전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 인증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없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등 여러 사항을 더 검토하여 결정한다.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거나, 환경경영 추진계획의 실천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면 이는 부적합 사항이 되어 인증기관에서 환경경영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시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기업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환경목표·세부목표를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업은 단지 인증서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경영체제를 운영하게 되어 환경경영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외부 고객 등의 요구에 의해 환경경영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환경경영의 기본 취지는 자발적인 환경경영으로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것인데 상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증서는 획득할 수 있으나 경영 효율 개선으로 인한 이익 창출로는 연결될 수 없다.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환경경영체 인증서의 획득이 기업의 환경경영 목적이 된다면 기업은 비생산적인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이다.

②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가 환경방침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환경목표·세부목표는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환경방침에 일치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에 명백히 그리고 중대하게 어긋나 설정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는 실효성이 없어 환경방침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방침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수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는 환경방침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은 환경경영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ISO 14001 규격에서도 환경목표·세부목표가 환경방침에 일치하여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목표·세부목표 설정시는 환경방침과의 일치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부목표를 설정시 활용하는 SMART 기법은 무엇인가?

SMART 기법은 세부목표 설정시 활용하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S(Specific) : 특정적·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목표는 상세한 성과요건이므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목표에서 제시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환경

경영 추진 계획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세부목표마저 추상적으로 모호하다면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 환경경영체제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M(measurable) : 측정 가능해야 한다.

모든 목표는 그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는 목표는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세부목표는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이어야 한다.

세부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수량, 횟수 및 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측정이 가능한 세부목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량 :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10% 줄인다
- 횟수 : 환경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
- 기간 :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인증을 2000년 10월까지 획득한다.

-A(agree-to) : 기업의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경경영은 자발적으로 기업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구성원이 동의할 수 없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세부목표는 효율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의 시작점이 되어 환경경영체제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차량5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설명하고 차량 5부제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5부제가 기업에 정착될 수 없어 세부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R(reasonable) : 합리적이여야 한다.

세부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여야 한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정하거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 등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T(time-bound) : 시간·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세부목표를 달성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달성 기간이 없는 세부목표는 실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청정생산과 환경경영

환경경영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자 및 실무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환경경영을 실시하여 기업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앞의 질문은 부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와 같은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이 환경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경경영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환경경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의 우수 기업들이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환경경영에 청정생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보호라는 대의적 명분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때문이다.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사후처리 기술이 아닌 원천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청정생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경영을 실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체제 구축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담 및 문의 전의

<http://www.asp.co.kr> ☎(02)915-5926